

청 원 서

수신 : 구미시의회의장

2008. 3. 17.

제목 :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 1)청원서 1부

2)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안), 시행규칙(안) 각 1부

3)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시행규칙 각 1부

4)청원 서명지 원본 1부

5)청원운동 제안 구미경실련 성명서 1부

6)청원 서명운동 보도자료 1부

7)청원운동 보도기사 모음 1부. 끝.

청원인(대표) : 윤종욱 (외 4,357명)

주소 :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

성명 : 윤종욱 (인)

소개의원(대표) : 한정우 (인)

소개의원 : 석호진, 임춘구

청 원 소 개 의 건 서

청원건명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소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		
	성명	윤종욱	주민등록번호	550619-*****
소개의원	(대표) 한정우 (인) 석호진, 임춘구			
소개년월일	2008년 3월 17일			
	<u>소개의견</u> (1)고유가, 고원자재가, 고농산물가, 고물가, 지구온난화 위기 등, 작금의 상황은 공공기관을 넘어 시민들까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지구온난화 주범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시민행동으로 나설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이러한 ‘유가 100달러, 지구온난화 시대’에 <구미시 경차우대 조례제정 청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청원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①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70% 요금감면 ②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 ③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신설·확대 지원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차 우대 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한 청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3)정부에서도 ‘경차 기름값 300원 인하 추진’ 등 경차 이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경차 붐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구미에서도 999cc 경차인 ‘모닝’을 사려면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경차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청 원 서

윤종욱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외 4,357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 청원’을 접수하오니,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랍니다.

청원 취지

(1)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유가 폭등,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 폭등, 미국 발 세계경제 침체 우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 위기 등, 우리가 겪고 있는 ‘유가 100달러, 지구 온난화 시대’라는 작금의 상황은 공공기관을 넘어 시민들까지 에너지 절약과 함께 지구온난화 주범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시민행동으로 나설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이에 구미경실련은 ‘유가 100달러, 지구온난화 시대 시민행동’이란 슬로건으로 <구미시 경차우대 조례제정 1만명 시민청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①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70% 요금감면 ②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10% 이상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 ③아파트단지과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 신설·확대 지원 등입니다.

(3)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차 우대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창원시 만큼만 경차를 우대해달라는 것입니다.

(4)최근 정부에서도 ‘경차 기름값 300원 인하 추진’ 등 경차 이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경차 붐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구미에서도 999cc 경차인 ‘모닝’을 사려면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경차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사오니, 구미시의회의 지지와 격려를 바랍니다.

(5)이와 관련,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난 3월 7일 이후 구미시가 만든 ‘구

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계획’ 중 ‘경형자동차 지원내용(구미경실련 제안 중 일부 반영)’에 【▲주차요금 감면 : 2시간 면제, 2시간 이후 50% 할인 ▲경차전용주차구획 :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 10% 이상 설치 -청색 실선으로 구획 및 “경차전용” 표시】 등 청원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돼 있음을 확인한 구미경실련은 서명 목표 ‘1만 명’을 중단함과 함께,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소개의원 세 분에게 판단을 일임하고 ‘3월말 청원’ 일정을 앞당겨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6)조금 미진한 부분은 첫째, 창원시처럼 별도의 경차우대조례를 제정하느냐, 아니면 구미시의 개정계획처럼 기존 조례에 반영하느냐의 문제와 둘째, 창원시처럼 2시간 무료 이후 할인율을 70%로 하느냐, 구미시처럼 50%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원시가 내용이 많지도 않은 경차우대조례를 굳이 별도로 만든 이유가, ‘환경도시’를 겨냥한 도시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한 데 있다고 봅니다. 실제 창원시는 경차우대조례를 만든 지 1년 9개월 만인 2007년 4월에 ‘자전거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구미시가 별도의 경차우대조례로 만들 경우, 창원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경차우대조례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도시’ 차원의 구미시 이미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년간의 별도 조례 유지 후 기존 조례로 통폐합하는 게 구미시 이미지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시간 이후 할인율 문제도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비해 상징성은 크다고 봅니다. 1만원 장려금 역시 창원시 2006년도 예산 1200만원이 2007년도엔 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부담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영주차장 주차구역설치 비용지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하되, 예산은 내년부터 편성하면 된다고 봅니다.

(7)끝으로 ‘전국 두 번째 경차우대 조례제정’이란 도시 이미지 상징성이 경차우대 조례제정 시민청원운동이 먼저 전개된 구미시가 아닌, 김천시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17일

윤종욱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외 4,357명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안)

제정 2008. . 조례 제 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도로 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기여하는 경차를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에 정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주차장 관리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3.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홍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차 보급 확대와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차이용 홍보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장려금 등 지급) 시장은 경차보급 확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경차를 신규 등록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시간 이후부터는 70%를 감면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

- ②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나 아파트단지와 기업체의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대수의 일정부분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나 아파트단지와 기업체의 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경차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